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체육시설 휴·폐업 통보 의무화, 시책수립 사항 '통보' 등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통보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을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-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업자가 휴·폐업 통지 시 회원, 일반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신설함 (시행규칙 제26조제3항·제4항 신설)

< 휴·폐업 통지 방법 등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휴업기간	○ 1개월 이상 휴업기간
통지 방법	○ 등기우편, 팩스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3항의 이용자에게 통지
통지에 갈음하는 조치	○ 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14일 이상 게시 ○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
통지사실	○ 휴·폐업사유 ○ 휴·폐업 기간(기일) ○ 이용료 등의 반환 방법

- 체육시설법 제36조(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)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28조(보고사항)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'보고'를 '통보'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입법예고 예정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(이하 “휴·폐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휴·폐업사유, 휴·폐업 기간(기일), 이용료반환 방법을 포함한 휴·폐업 사실을 등기우편, 팩스, 문자 메시지, 전자우편,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3항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9조제3항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휴·폐업사유, 휴·폐업 기간(기일), 이용료의 반환 방법을 포함한 휴·폐업 사실을 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14일 이상 게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자가 휴·폐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보고사항)”을 “(통보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고”를 각각 “통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행규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) ①~②(생략) <신 설>	제26조(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(이하 “휴·폐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휴·폐업사유, 휴·폐업 기간(기일), 이용료반환 방법을 포함한 휴·폐업 사실을 등기우편, 팩스, 문자 메시지, 전자우편,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3항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 법 제29조제3항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휴·폐업사유, 휴·폐업 기간(기일), 이용료의 반환 방법을 포함한 휴·폐업 사실을 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14일 이상 게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자가 휴·폐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8조(<u>보고</u> 사항)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	제28조(<u>통보</u> 사항) ①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<u>보고</u>하여야 한다. 1.~3. (생략)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<u>보고</u>하여야 한다. <신 설>	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 ----- -. 1.~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 -----.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별표 6 안전·위생 기준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-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된 안전·위생 기준 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규칙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- 시행규칙 별표 6 안전·위생 기준의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개정

구분	주요 내용
개정 '인명구조' → '인명구조' '수상안전'	(라)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<u>수상안전에 관한 자격</u>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입법예고 예정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2호사목(5)(라) 중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제1호가목”을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인명구조요원”을 “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시행규칙 별표 6 안전·위생 기준

현행	개정안
사. 수영장업 (5)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(이하 이 목에서 "수상안전요원"이라 한다)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. (가)~(다)(생략) (라)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<신 설>	사. 수영장업 (5)(현행과 같음) (가)~(다)(현행과 같음) (라) -----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또는 <u>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</u>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